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나, 다급) 채용 공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응시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대외A나1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사무처 대외협력담당관	서울 중구
대외A나2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대외A다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조사A다	전문임기제 다급	3명	사무처 조사1국 또는 2국 또는 3국	

※ 하나의 응시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응시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임용예정직무

응시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대외A나1	유해발굴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유해 발굴, 유전자 검사, DNA 검체 수집
대외A나2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입법과제 연구, 송무 담당 및 법률검토
대외A다	어학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 국제교류·협력, 국외 홍보, 통·번역 등
조사A다	진실규명 조사	전문임기제 다급	○ 조사1국 또는 조사2국 또는 조사3국 소관 사건 조사계획 수립, 진실규명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2026.9.17.)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9.17.) 기준]

※ 학위 요건의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6.10.15.)

채용 분야	임용 예정 직급	직위별 요건	
유해발굴	전문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	임기제 나급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①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진실규명조사	전문 임기제 다급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진실규명조사 : 법무, 조사·수사·감사, 인권, 역사, 기록물관리, 과거사 관련분야 등
- 유해발굴 : 유해발굴, 감식, 유전자검사, 유해DNA 검체 수집, 법의학, 군사학 등 관련분야
- 법률 : 법무 등 관련분야

※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

- 진실규명조사 : 법학, 수사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 유해발굴 : 인류학, 고고학, 법의학, 군사학, 유해발굴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법률 : 법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	직위별 요건	
어학	전문 임기제 다급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어학 : 어학, 영한/한영 통번역, 교정, 국제교류협력 관련 분야 등 (경력요건만 해당)

다. 우대요건 (어학분야만 해당)

-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경우, 응시자의 어학성적(기준점수 통과 여부)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에 의해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시험 구분	TOEIC	TOEFL IBT	IELTS	TEPS
기준 점수	900점	100점	7.0점	450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 예정일(2026.9.17.)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공통요건을 만족하면서'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요건, 학위요건, 자격증 중 해당되는 사항 중 **가장 유리한(확실한) 요건을 1개만 선택**
 - 유해발굴 : 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학위③ 중 1개 선택
 - 법률 : 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학위③, 자격증① 중 1개 선택
 - 진실규명조사(다급) : 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 중 1개 선택
 - 어학 : 경력①/경력②/경력③ 중 1개 선택
 - ※ 선택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요건을 중복 선택하면 서류전형 불합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9.17.예정) 기준 판단,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6.10.15.)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공무원경력이 아닌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 목차 및 논문 요약본 등 제출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0.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 예정 직위별 응시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 단, **어학분야의 경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경력, 어학성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에 의해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역량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7.30.(목) ~8.14.(금)	'26.8.10.(월) ~ 8.14.(금)	'26.9.4.(금) (예정)	'26.9.17.(목) (예정)	'26.10.1.(목)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및 나라일터에(www.gojobs.go.kr) 게재 예정, 수시 확인 요망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10.(월) ~ 8. 14.(금)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jinsilrecruit@korea.kr) 접수**
 - －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9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채용담당자/ 문의 : 02-3393-9779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 ※ 전자우편 접수 마감시간은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유효
 - ※ 응시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제목 : (예시) 진실화해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제출(나급, 홍길동)**
 - ※ 전자우편 제출 시 서류들은 **A4사이즈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모아 찍기’ 등 금지**되며 메일의 첨부파일 중 가장 위에 있는 파일 1개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 **방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미준수, 서류 미비, 전자수입인지 미첨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 원서접수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미리 제출한 원서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반드시 “붙임3(제출서류 안내)” 참조**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빠짐없이 제출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응시원서 1부 ※ 전자수입인지 응시원서 뒤에 첨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 등본 불인정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현역은 군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면제일 경우 병적증명서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에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 제출 필요) ※ 개명한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되게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최근 90일 이내 발행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기타 필요(증빙) 서류 ※ 응시자격 요건인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대외A나2), 우대요건 관련 공인어학성적 사본(대외A다) 등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the '증명·등록·신청' (Certification, Registration, Application) menu is highlighted. A red box and arrow point from this menu to the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Fact Confirm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 option. Another red box and arrow point from this option to the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Industry information of a closed business) option under the '민원증명' (Citizen Certification) section.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중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0. 6. ~ 11. 7.
- 응시원서는 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채용절차가 진행중인 다른 공고 포함/중복 지원 시 접수 불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0월 15일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9년 2월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전문임기제 다급	70,782	50,272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채용팀 (02-3393-9779)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응시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대외A나1	유해발굴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사무처 대외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 유해발굴,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유해 DNA 검체 수집 등		
필요 역량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등),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등),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판단력,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필요 지식		○ 고고학적 조사기법, 법의인류학, 유전자 분석 및 생체 시료 지식 ○ 군사학 및 전쟁사 지식 등 관련분야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유해발굴, 감식, 유전자검사, 유해DNA 검체 수집, 법의학, 군사학 등 관련분야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 - 인류학, 고고학, 법의학, 군사학, 유해발굴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우대요건				
가산점				
※ "경력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 "학위요건"은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대외A나2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사무처 대외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유해발굴 특별법 등 입법과제 연구 ○ 위원회 결정에 따른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진실규명 관련 법률 자문 및 법 제개정 ○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관련 재심, 국가배상소송 판결 수집 및 정리 등
-------	--

필요 역량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등),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등),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판단력,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	--

필요 지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진실규명과 관련한 법무·행정적 지식 ○ 법무, 소송 관련 제반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법무 등 관련분야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 법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자격증	①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가산점		

※ "경력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 "학위요건"은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대외A다	어학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사무처 대외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 과거사 청산 국가 및 국제단체 교류·협력 ○ 과거사 관련 기본자료 영문번역 및 게재 ○ 해외동포 통역, 해외 언론보도 및 언론간담회 홍보, 영문홈페이지 관리 등
-------	---

필요 역량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등),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등),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판단력,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종합적 지식 ○ 국외 인권기관 교류 협력 및 국외홍보 업무, 해외 입양알선기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 ○ 영어 구사, 영한/한영 통번역에 능통한 자 ○ 국제회의 등에서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

응시 자격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어학, 영한/한영 통번역, 교정, 국제교류업무 관련분야 등
우대요건		공인어학성적 보유자(TOEIC 900점, TOEFL IBT 100점, IELTS 7.0점, TEPS 450점)
가산점		

※ "경력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 "학위요건"은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조사A다	진실규명 조사	전문임기제 다급	3명	사무처 조사1국 또는 2국 또는 3국
주요 업무		○ 조사1·2·3국 소관(항일·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적대세력사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또는 수용시설, 해외입양 인권침해사건 등) 분야 진실규명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관리 ○ 전체위원회 활동 조사보고서 작성 ○ 전체위원회의 결정사항 처리 등		
필요 역량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등),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등),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판단력,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필요 지식		○ 소관 분야 사건 관련 종합적 지식 ○ 조사기획 수립, 분석, 평가 등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지식 ○ 조사, 수사, 감사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 조사보고서 작성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법무, 조사수사감사, 인권, 역사, 기록물 관리, 과거사 관련분야 등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법학, 수사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법무, 조사수사감사, 인권, 역사, 기록물 관리, 과거사 관련분야 등		
우대요건				
가산점				
※ "경력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 "학위요건"은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됨
- * 전자우편 제출 시 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반드시 1개의 파일(pdf형태)로 A4 사이즈 스캔 후 제출**(제출 전 페이지 누락 여부, 서명 누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2쪽 모아찍기’ 등 금지되며 첨부파일 중 가장 위에 있는 파일 1개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발급 - 전문임기제 다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발급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받아 응시원서 뒤에 첨부 (수입인지 미발급·미첨부 시 필수서류 미비로 불합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담당업무의 추진계획·수단·방법·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 나급 :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 다급 : A4 요약서 없이 A4 3매로 작성(총 3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 등본 불인정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현역은 군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면제일 경우 병적 증명서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에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 제출 요)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최근 90일 이내 발행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박사학위가 응시요건에 필수적인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당 논문의 표절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함께 제출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1부 ※ 추후 학위취득증명서를 임용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담당자) 연락처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1. 어학성적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응시원서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예시) 전문임기제 다급 / 조사B다	
응시자격		(예시) 경력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하나의 응시자격만 선택하여 기재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예시) 전문임기제 다급 / 조사A다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합니다.
- 2.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장소에 사전등록시간까지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하며, 출력 후 날인 및 서명(도장 또는 수기)하여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상단의 “날인 또는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
※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 금지
 - ②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응시코드 기재
(예) 전문임기제 나급 / 조사B나
 - ③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미선택·중복선택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서류 심사 불합격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
 - ④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⑥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⑦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⑧ 정부수입인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나급 10,000원, 다급 7,000원)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를 응시원서 뒤에 첨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⑨ 보완사항 : 기재하지 않음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코드, 응시분야, 응시 직급, 성명 : 기재

2. 응시자격 ※ 증빙서류가 없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에 작성 금지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응시자가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하며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최근 경력 순으로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은 기재하지 않되, 참고가 필요한 경력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엔 '3기타사항'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응시자가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10월 15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 진실규명 조사
-----	--	-----------	--------------------

◎ 자기소개서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작성요령)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줄 간격 160%로 작성
- 지원배경, 관련분야 수행 경험 등 필수 기재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인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 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 진실규명 조사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작성요령)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임기제 나급 : A4용지 6매(요약서 1매 포함)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전문임기제 다급 : A4용지 3매(요약서 미포함)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줄 간격 160%로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농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